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87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동외어린이집) 위탁기간(2019. 1. 1. ~ 2023. 12. 31.) 만료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3조

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4.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현원장	소재지	규모(㎡)		정원	교직원수	비고
			연면적	층수			
동외 어린이집	김도명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47번길 12, 104동 1층	132.87	지상1	30 (현원 12)	6	

나. 위탁개요

- 위탁 운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기위탁내역: 2014. 1. 1. ~ 2018. 12. 31/2019. 1. 1. ~ 2023. 12. 31.
- 위탁방법: 재위탁(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연도	인건비 지원	비고
2024년 ~	- 원장, 영아반보육교사 80% - 유아반 보육교사 30% - 조리원 100%	

- 어린이집 지원(공통)

지원구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 보조·연장보육전담교사: 1인 월 1,099천 원 - 인건비(자체)사업: 월 1,080천원	
운영비	- 차량운영비: 월 200천원 - 교재교구비: 연 1,000천원 - 누리과정(3~5세)운영비:1인 55천원(월) - 안전보험료: 1인 4,890원(연간) - 영유아 급간식비: 1인 20천원(월)	

5.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존 운영권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의 지원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기존 어린이집에서 활동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인력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어린이집 평가 등급 ‘A’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품질 향상 및 보육의 질 개선 효과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3년)를 통해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및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보조금의 정산, 예·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평가등급제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사.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도보로 이동가능한 어린이집 부존재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과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아. 그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필요

6. 기대효과

- 아동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
-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제공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7. 향후 추진계획

- 가. 2023. 10.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나. 2023. 10. : 1차 사전심사 및 자료 검토
- 다. 2023. 10. : 면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라. 2023. 12. : 재위탁 계약 및 위탁 계약증서 발급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12.31.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동의안 내용 검토

-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외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는 보육 관련 전문지식과 운영에 따른 자격이 필요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함.

-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2014년 최초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2019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였고, 금회 기존 수탁자와 다시 재계약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라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 재위탁의 근거는 있음.
- 그러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군수는 민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4. 1. 1.~2028. 12. 31.(5년)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5년 이내로 적정함.

- 민간위탁운영 소요 예산의 적정성

-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동의안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재위탁 근거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위탁(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결정에 관한 성과평가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10. 토 론 : 없음.

11.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